

도축검사 수수료 현황

□ 도축검사 검사수수료

<2012. 8월 현재>

시 · 도	수수료(원)		조정시기	비 고
	소	돼지		
부산광역시	1,500	600	2008년 02월	
대구광역시	1,000	500	2003년 12월	
인천광역시	2,000	700	2006년 11월	
광주광역시	1,200	600	2003년 05월	
대전광역시	1,200	700	2006년 09월	
울산광역시	1,000	500	1998년 10월	'97 광역시 분리 제정
시 평균	1,317	600		
경 기 도	2,000	700	2006년 07월	
강 원 도	2,000	700	2007년 03월	
충청북도	3,000	1,000	2011년 07월	
충청남도	2,000	700	2004년 11월	
전라북도	2,000	500	2004년 11월	
전라남도	2,000	700	2011년 12월	
경상북도	2,000	700	2008년 10월	
경상남도	2,000	700	2004년 06월	
제 주 도	2,000	500	2004년 10월	
도 평균	2,111	689		
전국 평균	1,793	653		

□ 도축검사수수료 인상 비율

<2012. 8월 현재>

시 · 도	전		후		인상율(%)		조정시기
	소	돼지	소	돼지	소	돼지	
부산광역시	1,000	200	1,500	500	50	150	2008년 02월
대구광역시	1,000	200	1,000	500	-	150	소 돼지 2003년 12월
인천광역시	1,000	200	2,000	700	100	250	2006년 11월
광주광역시			1,200	600			2003년 05월
대전광역시	450	500	1,200	700	167	40	소 2003년 08월 돼지 2006년 09월
울산광역시	-	-	1,000	500	-	-	광역시 분리
시 평균	863	275	1,317	600			
경기도	1,000	500	2,000	700	100	40	2006년 06월
강원도	1,000	200	2,000	700	100	250	2007년 03월
충청북도	1,200	400	3,000	1,000	250	250	2011년 07월
충청남도	1,000	500	2,000	700	100	40	2004년 11월
전라북도			2,000	500			2004년 11월
전라남도	1,200	400	2,000	700	67	75	2011년 12월
경상북도	1,500	500	2,000	700	33	40	2008년 10월
경상남도	1,000	500	2,000	700	100	40	2004년 06월
제주도			2,000	500			
도 평균	1,286	429	2,111	689			
전국 평균	1,032	373	1,793	653			

도축 시 각종 부담금(도축장에서 징수)

구분	내용	법적근거	금액	비고
도살·처리 수수료	도축장영업자에게 지불하는 수수료(영업자 자율)	-	소 7만원~15만원/두 돼지 1만원~1.5만원/두	'10.11.26법적근거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1조, 동법시행규칙 제58조) 폐지로 자율 시행
도축세	도축장도축시 부과하는 조세(시군세)	-	가축시가의 1% (소40,000원/두, 돼지2,300원/두)	지방세법에 근거하여 징수 하였으나 '11.1.1부터 폐지
검사수수료	지자체의 검사기관(도 소속) 이 도축검사에 따른 비용	축산물위생관리법제41조4호	소(평균) : 1,793원 (1,000~3,000) 돼지(평균) : 653원 (500~1,000)	지자체별 금액 상이 (조례)
등급판정 수수료	축산물등급판정에 따른 비용	축산법제49조제2항	소 2,000원 돼지 400원	전국 동일금액 (등급수수료 고시)
축산자조금	축산단체에서 농가 스스로 가축을 출하하는 경우 거출	축산자조금법제7조제1항	평균거래가격의 1천분의5이내 소 20,000원 돼지 800원	전국 동일금액 (자율 협의)